

「2026년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」 공고

「2026년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」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본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6. 1. 12.(월)부터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(<https://www.gmi.go.kr>)을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1월 12일
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

1 사업 목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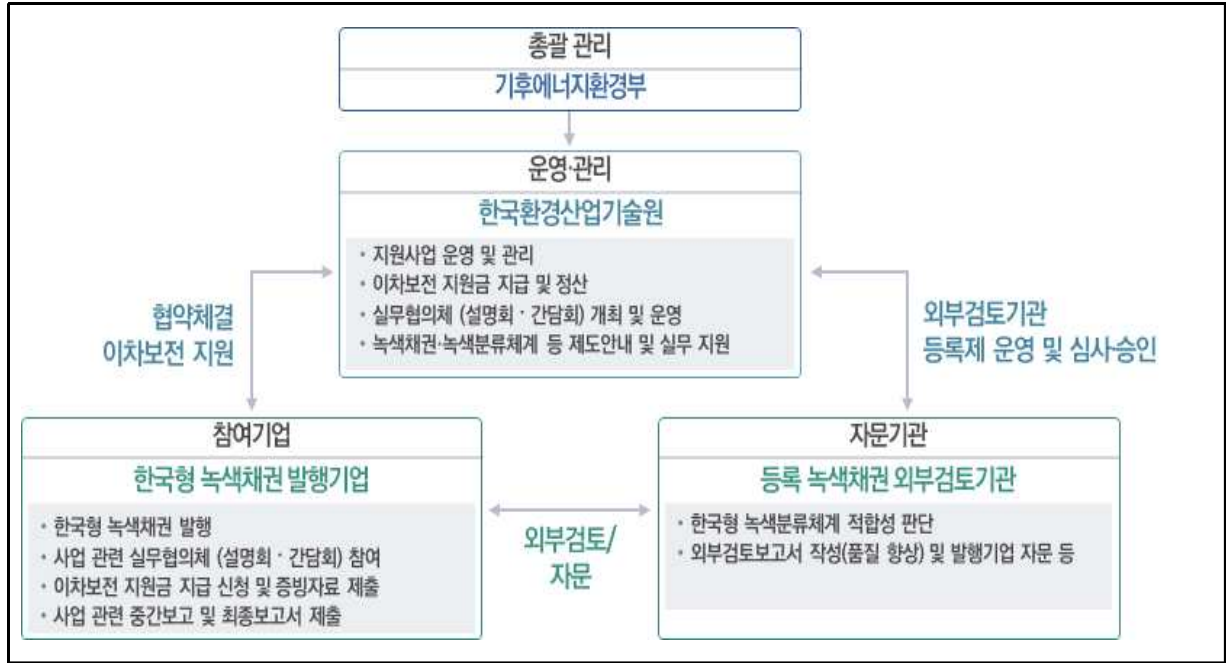
- 녹색산업 육성 및 녹색위장행위(그린워싱)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**한국형 녹색분류체계***의 시장 안착 필요
 - * 6대 환경목표(온실가스 감축, 기후변화 적응,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, 순환경제로의 전환, 오염 방지 및 관리, 생물다양성 보전)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
-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‘**한국형 녹색채권**’의 발행 활성화 및 민간자본의 **녹색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자금 지원**

2 공고 개요

- (사업명) 2026년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
- (사업규모) 8,100백만 원
 - ※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
- (지원내용)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차비용 일부 지원
- (지원대상) 2026년도 내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기업

- (추진 체계)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총괄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참여기업 선정 및 외부검토키관 등록제도 운영하여 참여기업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

< 추진체계 및 주요 역할 >



3

지원 세부사항

구 분	내 용
지원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녹색채권 발행일로부터 1년 ○ 녹색채권 만기일이 1년 이내거나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차·상환하는 때는 해당 만기일 또는 차·상환일 전일까지로 함 ※ 단, 정부 예산 및 자금 사정에 따라 이차보전 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조정하거나 지급을 중단할 수 있음
지원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참여기업별 최대 3억 원
지원금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기업·공공기관 : 0.2% ○ 중소기업·중견기업 : 1.0% ※ 단, 해당연도 예산 상황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이 사업의 공고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
지원금 산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채권 금액 X 지원금리 X 이자납부일수) / 365일 ※ 1) 단, 지원기간에 윤년이 포함될 때는 366일로 함 2) 원 단위 이하 금액은 절사함 3) 지원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일괄 개산금 지급함

4

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

- (신청대상) 2026년도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(예정) 기업
 - ※ 공고 기간 내 발행된 2026년 한국형 녹색채권은 소급하여 지원 가능
- (신청부문)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“녹색”, “전환” 2개 부문
- (선정방법) 신청기업 접수 후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신청요건 확인(제8조) 및 선정사항(제10조) 등을 검토하여 선정

< 신청요건 및 선정사항 >

구 분		주요 내용	
신청요건 (제8조,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)	장기신용등급 (회사채신용등급)	○ 대기업·공공기관 등	A ⁰ 등급(유효등급) 이상 받은 기업
		○ 중소기업·중견기업	BBB등급(유효등급) 이상 받은 기업
	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 여부	○ 녹색채권 발행(예정) 프로젝트가 녹색분류체계의 활동기준을 충족하는 녹색경제활동 ※ 단, 실제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시 “활동·인정·배제·보호 기준”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, 기준 미충족에 따라 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차보전 지원 불가	
	중복(동일) 프로젝트 여부	○ 녹색채권 발행(예정) 프로젝트가 이전에 한국형 녹색채권으로 발행되어 이차보전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을 것 ※ 단, 지원금을 공고에서 정한 한도 이내로 지원받은 경우는 예외	
자금사용	○ 설비투자금을 비롯한 시설자금(운영비·예비비 불가) ※ 단, 중소·중견기업의 경우 녹색분류체계 해당 경제활동에 부합하는 운전자금(자금산출 내역 확인 필요)을 50% 미만으로 포함할 수 있음 ※ 단, 일부 경제활동에 한하여 최종사용자의 시설투자 및 유형자산 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녹색분류체계 해당 경제활동에 부합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으로 인정		
선정사항 (제10조, 참여기업의 선정)	선정사항	○ 기업규모(중소·중견기업 우선 선정), 녹색채권 발행일자, 경제활동 부문별(녹색·전환), 특정 경제활동 비율 등 검토 ※ 중소·중견기업 및 일부 경제활동의 운전자금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있을 수 있음	

○ (신청기간) '26. 1. 12.(월) ~ '26. 2. 27.(금) 18:00까지

※ 지원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며, 최후순위로 선정된 기업은 잔여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

○ (신청방법)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 사이트(<https://www.gmi.go.kr>)에 하단 제출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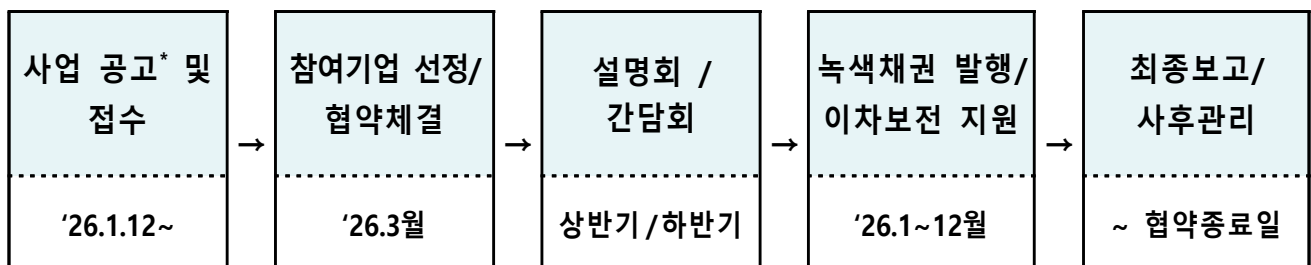
※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

○ (제출서류)

순번	제출서류	양식
1	참여신청서	붙임1
2	사업계획서	붙임2
3	확약서	붙임3
4	자금배분 산출내역서 (중소·중견기업, 일부 경제활동 해당시)	붙임4
5	중소·중견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(해당시)	-
6	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	
7	법인인감증명서 원본, 사용인감계 원본(필요시)	
8	국세 ·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	
9	장기신용등급(회사채신용등급) 확인서 또는 평가서 사본 ※ 제출일 기준 유효한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별도 확약 후 녹색채권 발행 전 제출 필요	

5

주요 추진일정



* 필요 시 추가 공고할 수 있음

○ (주의사항)

- 제출된 서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
- 추후 제출 내용 관련하여 허위 사실이 발견될 때는 선정 취소될 수 있음

○ (국외사업)

- 해외 현지 투자를 위한 국내 원화 녹색채권 발행 시 운영기관과 협조·협업하여 이차보전 지원사업 참여 가능

○ (문의처)

-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투자지원실 이승민 전문선임연구원
Tel) 02-2284-1964 / Email) seungmin.lee@keiti.re.kr
-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투자지원실 홍은아 책임연구원
Tel) 02-2284-1974 / Email) pylon99@keiti.re.kr